

국내외 고령친화식품산업 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Regulation and promotion status of food industry for aged people

우희동, 하용근, 이중근*

Heedong Woo, Yonggeun Ha, JoongKeun Le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산업단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Industry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각종 자료에서 향후 고령 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단순 수명 연장에서 건강 수명의 증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 모든 산업분야에서 대비해야 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이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에 대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 국가별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식품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호식품(Care Food)'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저작·연하 곤란환자를 위한 물성조

절 식품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서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제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노인 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식품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의료용 식품 또는 특정 영양 성분이 강화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유럽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가 노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간혹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제품들도 일부 노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바라보면서 미래 식품산업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Corresponding author: JoongKeun Lee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Industr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643

Yeonje-ri Gangoe-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363-951), Korea

Tel: +82-43-713-8488

Fax: +82-43-713-8909

e-mail: leejk@khidi.or.kr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제 외국의 고령친화식품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과 비교하고자 한다.

II 본문

I.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현황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 복지법이 정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2011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3%인 5,537,072명에 달하고 있다.(1) 국제연합(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14.3%와 2026년 20.8%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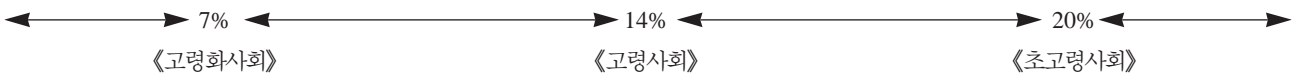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는 205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2%로 프랑스(25.9%), 미국(21.0%), 일본(37.7%)보다 앞서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이탈리아 61년, 미국 72년으로, 40년 이상에 걸쳐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8년 정도라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고령친화식품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겠다.

2. 고령 소비자의 건강 요구 증가

앞에서 제시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소비자 그룹인 노인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수요자의 요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별 예상인구

	2000년	2011년	2018년	2026년	2050년
총 인구(명)	47,008,111	48,988,833	49,340,350	49,038,710	42,342,769
65세 이상(명)	3,394,896	5,537,072	7,074,763	10,218,239	16,155,757
비율 (%)	7.2	11.3	14.3	20.8	38.2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6

표 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인구 비율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2010	11.0	22.5	16.5	20.5	20.6	17.3	12.8	16.6
2015	12.9	26.2	18.5	20.9	22.1	18.3	14.1	18.1
2020	15.6	28.4	20.2	22.4	23.2	19.5	15.8	18.9
2025	19.9	29.5	21.7	24.4	24.6	21.4	17.8	19.9
2030	24.3	30.6	23.2	27.3	27.0	23.9	19.4	21.6
2035	28.4	32.3	24.3	29.8	29.6	26.7	20.2	23.1
2040	32.5	34.9	25.3	30.3	31.8	29.7	20.5	23.7
2045	35.5	36.6	25.6	30.1	32.8	32.2	20.6	23.7
2050	38.2	37.7	25.9	30.2	32.6	33.2	21.0	24.1

출처: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2010

표 3. 주요국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2009년 기준)

구분	미국	영국	한국	중국	인도
기대수명	79세	80세	80세	74세	65세
건강수명	70세	72세	71세	66세	56세
격차	9년	8년	9년	8년	9년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cs 2011,
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2011

삼성경제연구소는 WH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수명¹⁾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8~9년에 달해 '삶의 연장' 보다 '삶의 질' 향상을 헬스케어 수요자의 최대 관심사로 분석한 바 있다(2). 이와 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꾸준한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 소비자의 건강 요구 증가는 고령친화식품산업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이자 시장 성장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고령 소비자의 특징은 식욕저하, 혀의 미각세포의 둔화, 이의 약해짐(감소), 연하기능 저하, 침 분비 감소, 위 점막 위축 및 위액 분비 감소, 혈액 분비 감소 및 지방 소화능력 저하, 장의 운동능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3). 하지만 아직 이러한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은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산업의 당면과제는 이런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제품화라고 할 수 있겠다.

3. 고령 소비자의 경제력 변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분석 결과, 미래의 고령친화 식품 소비자 그룹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력은 현재의 고령 소비자 그룹인 60대 이상의 경제력보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세대별 노후 준비상황이 2005년, 2007년, 2009년 각각 63.5%, 72.7%, 75.3%로 향상되고 있었으며 노후 준비 항목으로는 국민연금(35.9%), 기타공적연금(9.4%), 사적연금(20.2%), 퇴직금(4.3%), 예금·적금(22.8%), 부동산 운용(6.6%) 및 기타(0.8%) 항목이 해당되었다(4).

또한 통계청에서 2010년에 실시한 가구금융조사의 연령계층별 자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순 자산액은 2억 3천만이며, 이중 가장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1, 2, 3 순위가 각각 60-64세 그룹, 55-59세 그룹, 50-54세 그룹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장년기에 부의 축적이나 저축의 증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은퇴 후에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한다는 생애주기설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2006년에 이루어진 통계청의 전국 가구자산조사에 따르면, 2010년 결과와 다르게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순 자산액 기준으로 60-64세 그룹이 아니라 55-59세 그룹으로 나타난

표 4. 연령계층별 자산 현황: 2010년

(단위: 가구, %, 세, 백만원)

항목	전체평균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이상
가구분포	100.0	7.8	12.1	13.0	12.5	11.9	8.9	7.6	20.8
가구원수	2.9	2.8	3.4	3.7	3.7	3.4	3.0	2.6	1.9
가구주 연령	50.8	32.1	37.1	41.9	47.0	51.9	56.9	61.9	72.6
경상소득	37.7	38.4	44.1	48.2	47.3	49.1	43.0	34.6	16.5
가처분소득	29.1	29.7	34.4	37.4	35.8	37.5	32.5	26.8	13.2
비소비지출	8.6	8.7	9.7	10.8	11.5	11.6	10.5	7.8	3.3
자산총액	272.7	160.0	215.0	261.4	304.1	355.8	360.9	421.9	246.9
부채총액	42.6	33.2	41.3	51.4	55.4	62.1	54.1	49.3	23.7
순자산액	230.0	126.8	173.7	210.0	248.7	293.7	306.8	372.6	223.2

자료: 가구금융조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2010

주: 총자산(저축, 부동산, 기타)(만원) 순자산(총자산-부채)(만원) 비소비지출(연이자포함) (만원)

1) 건강수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

표 5. 연령계층별 자산 현황: 2006년

(단위: 가구, %, 세, 백만원)

항목	전체평균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이상
조사가구수	8,275	705	1,043	1,302	1,255	966	803	628	1,220
가구분포	100.00	8.46	12.23	15.38	14.77	11.46	8.98	7.44	15.43
가구원수	2.88	2.99	3.50	3.64	3.24	2.93	2.72	2.36	1.91
가구주 연령	48.9	32.3	36.9	42.1	46.8	51.8	57.0	62.2	71.8
총자산	281.1	123.1	219.4	293.0	312.6	360.3	387.9	373.3	295.4
순자산	241.6	94.3	176.3	240.3	266.6	315.0	340.6	332.7	270.6
저축총액	57.4	47.8	61.9	67.7	67.2	64.7	66.5	56.4	40.3
부채총액	39.5	28.8	43.1	52.7	46.1	45.4	47.2	40.5	24.9
부동산평가액	216.0	68.7	148.7	216.3	236.0	284.8	313.1	310.1	251.8
기타자산	7.6	6.6	8.8	9.0	9.4	10.9	8.2	6.8	3.3

자료: 가구자산조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6

주: 총자산(저축,부동산,기타) (만원) 순자산(총자산-부채) (만원)

바 있다. 하지만 조사기준 년도를 감안하면, 2006년 결과의 55-59세 그룹이 2010년 60-64세 그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²⁾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광복·전쟁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산을 더 축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런 상황은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령친화식품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의료보험가입률의 변화를 분석해보면(표 6), 고연령층의 경우 젊은층에 비하여 보험가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10.7%만이 민간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우 낮은 가입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50대가 60대가 되는 십년 이후에는 보험가입률이 73.05%로 급격히 증가하고, 현재의 40대가 60대가 되는 20년 이후에는 보험가입률이

76.8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이는 향후 의료보험을 통해서 고령 환자에게 공급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수요가 증가를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소비자 그룹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14%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현재 고령 소비자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주요 성장 견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겠다.

4.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 제도 현황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의 건강상태, 경제활동 및 사회적 역할, 생활수준의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에 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회적 변

표 6. 국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단위: 세대, %)

구분		연령					합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민간 의료 보험	미가입	1,464	939	939	875	1,414	1,861	7,493
		(38.34)	(24.31)	(23.14)	(26.95)	(53.76)	(89.30)	(38.03)
	가입	2,356	2,923	3,119	2,372	1,216	223	12,20
		(61.66)	(75.69)	(76.86)	(73.05)	(46.24)	(10.70)	(61.97)
합계		3,821	3,862	4,058	3,247	2,630	2,084	19,702

자료: 이현복·현경래(2011) 재인용

2) 남준우 2006

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수립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9조에서는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15」에는 고령자용 식품산업의 기반조성이 추진과제로 반영되었다.

또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2006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7.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5.18 제정)

제19조(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12.28 제정)

제1조(목적)

- ①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표 8>과 같이 고령친화제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식품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는 별도로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였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주관으로 제5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이 보고되었으며 이때 처음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이 8대 산업에 19개 품목이 선정되었고, 이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II」에서 식품산업을 포함한 교통, 의약품, 장묘, 의류 및 교육 등 고령친화성이 높은 산업의 추가 발굴하여 총 14대 산업 34개 품목이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다(5,6).

5. 우리나라 고령친화 식품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산업은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식품산업분야

표 8.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의 고령친화식품산업에 대한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구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나. 노인요양 서비스
 -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표 9. 고령친화산업 전략품목 (14대 고령친화산업의 34개 품목)

부문		전략 품목
1차: 8대산업 (19개 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2차: 6대산업 (15개 품목)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출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I), (II), 2005, 2006

전략품목으로 제시한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표 10>과 같이 정의되어

표 10. 현행 식품공전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및 식품유형

정 의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9. 특수용도식품, 19-5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유형	
	(1) 환자용 균형영양식 (2) 당뇨환자용 식품 (3) 신장질환자용 식품 (4)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 (6)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7)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8)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1호(2007.5.23)를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등의 고령친화식품에 해당될 수 있는 식품유형들이 신설 되었다.

고령사회에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초기 기술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 환자식 개념으로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국가 전략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선진국들의 이런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다양성을 살려서 맞춤식·기능식 등 고령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2. 건강기능식품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생리적인 노화가 진행되어 면역기능의 약화, 소화기능의 저하, 근골격의 약화 등으로 각종 질병이나 상해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인체의 기능적인 쇠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부가

표 11. 건강기능식품 상위 10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10대 품목			
1	홍삼	6	오메가-3지방산 함유유지
2	개별인정형	7	프로바이오틱스
3	비타민 및 무기질	8	글루코사민
4	알로에	9	식이섬유
5	인삼	10	효모

출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제도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가 되는 기능성 원료는 크게 ‘고시형’ 과 ‘개별인정형’ 으로 구분되어지며,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 등 총 62종이 고시되어 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의 경우, 2008년 국민건강영양통계에 따르면 홍

삼추출물을 섭취하는 인구 중 65세 이상의 섭취량 비율이 77.1%에 이를 정도로 주로 고령자 층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1>은 건강기능식품 중 판매되어지는 상위 10개의 목록이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요구도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많고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제품이 편중되어 있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개발 및 과학적인 검증자료가 요구된다.

6. 제 외국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도 및 고령친화식품 산업 현황

<일본>

1. 일본의 고령산업 관련제도

일본은 1963년 생활보호법에서 노인복지법을 분리하여 제정한 이대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거주, 교육 및 여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분야의 일련의 법체계가 적절하게

표 12. 한국과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정책 비교

	한국	일본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 고령친화산업진흥법('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노후종합시설정비법('89)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93) 고령자 주거안정확보에 관한 법률('93) 복지용구 실용화 개발 비용 조성 제도('93) 고령사회대책기본법('95) 개호보험제도('00)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서비스진흥회('87) 테크노에이드협회('87) 건강장수마을추진센터('90) 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03)
추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친화제품개발 종합지원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고령친화제품 종합 체험관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표시제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사회대책회의 실버마크 인증제도 실시('83)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 지원('93) 기술개발지원, 표준화 개호실습·보급센터 복지용구정보시스템 국가자격시험(의지장구사) 인력양성 연수(복지플래너 등) 실버서비스 전시, 국제복지기기전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ATC Ageless Center) 설립

입법화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그로인해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7).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이념으로써 국민과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사회대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국민의 노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강구해야 할 고사회대책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여, 생활환경 등의 시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 할 것과 특별기관으로서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노인복지 로드맵(‘90 골드플랜→’95 신 골드플랜→’00 골드플랜 21)’을 마련하여 요양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였고, 2000년 ‘공적개호(介護)보험제도’ 실시하였다. 이후 고령친화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시장규모는 2001년 39조엔에서 2025년 155조엔으로 성장규모를 전망하였다.

경상성은 1993년 연구개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복지용구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용구 연구개발에관한법」을 마련하여 기술향상을 위한 재정·금융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복지와 산업육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초기에 정부는 법률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개화기에 지자체는 입지혜택 등으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중심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8).

2. 일본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개호식품

개호식품이란 고령, 질병 등으로 섭취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섭취기능에 맞게 안전성 면에서 물성을 조정하고 미각, 시각은 물론 영양도 고려한 식품을 말한다. 고령자가 먹기 쉽게 연하고 걸쭉하게 만든 식품으로 연하기능 장애로 식사량이 감소해 생기는 영양실조, 탈수증상은 물론 오염에 의한 폐렴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다. 개호식품은 연하식, 소프트식, 부드러운 식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고, 특별용도식품의 고령자용 식품,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연하 곤란자용 식품 등이 속한다.

표 13. 개호식품의 분류

분 류	특 성
수분보급형 식품	수분보급 젤리
영양보급형 식품	칼로리 섭취 목적, 성분 강화 목적
농후유동식	식사 대체
저작·연하 보조식품	점도 조정 식품, 고형화 보조 식품

특별용도 식품

특별용도 식품이란 유아, 임신·수유부, 고령자 등의학적, 영양학적인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발육과 건강 유지·회복에 적절하다고 하는 특별한 용도의 표시가 허가된 식품을 말한다.

2009년 2월 12일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 허가 등에 통지”(식안발제 0212001호)에 의거 새로운 특별용도 식품 제도가 200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특별용도 식품은 ① 병자용 식품: 허가 기준형(저단백질 식품, 알레르겐 제거 식품, 무유당 식품, 종합영양식품), 개별 평가형, ②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③유아용 조제분유, ④연하 곤란자용 식품으로 분류되어 진다.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법(제26조)에 근거하는 소비자청장(2009년 8월말일까지 후생 노동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합성을 심사하고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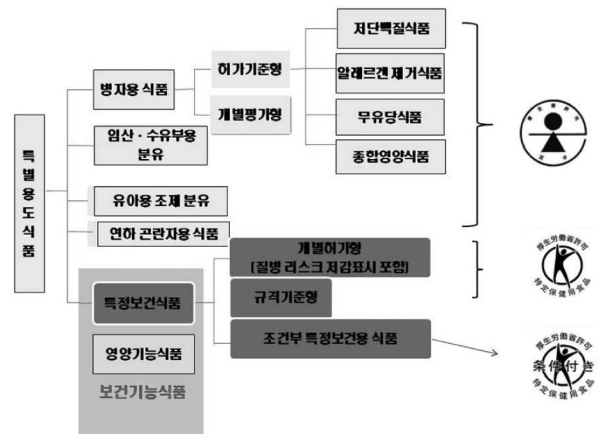


그림 1. 특별용도식품의 분류 체계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 (UDF, Universal Design Food)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란 어떤 사람이라도 먹기 쉽게 만든 개호식품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대응하여 섭취하기 쉽게 형상, 물성 및 용기 등을 연구하여 제조된 가공식품 및 형상, 물성을 조정하기 위한 식품을 말한다. 씹는 힘이나 삼키는 힘이 약해진 사람도 먹기 쉽도록, 단단한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통상보다 작게 만들거나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 재료를 연하게 가공한 식품이다. UDF는 법률 규제에 의한 표시가 아니라, 식품 업체가 작성한 자가기준에 따라서 운용되는 자주 규제 표시이며 판매는 일반식품과 같이 취급하며, 2002년 개호식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일본개호식품협회가 식품업체별 UDF의 구분을 통일하여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미국>

3. 미국의 고령산업 관련 제도

1965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Medicare(국영건강보험)를 통해 65세이상 노인, 장애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Medicare는 크게 병원보험(입원, 전문개호시설 이용 등을 전액 정부가 부담)과 의료보험(필요비용 보충)으로 구성되어, 요양시설, 재가기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방정부의 고령자대책청(Administration on Aging)과 각 주의 지역 고령화대책실은 민간주도형 복지시스템

을 구축하여 민간단체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내용 중 재택서비스와 지역서비스 분야에 급식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국립고령화연구소(NIA, '74, 생명의료과학)와 국립장애재활연구소(NIDRR, '78, 재활공학)를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보조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의식주 및 기본의료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노인촌락(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을 다양화하여 1900년 이전에 7개에서 1990년대 초 전국 600개를 넘어섰으며, CCRC의 종류는 독립생활시설, 간호보호시설, 전문요양시설, 통합형 연속 장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미국은 정부정책에 의해 산업을 별도로 육성하기보다는 생명의료공학 및 재활기술을 노인의 건강과 기능향상에 적용하고 있다(8).

4. 미국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미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5년에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노인 소비자를 위한 실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고령친화 식품은 노인 소비자의 영양 보충을 위한 제품 또는 특정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용 식품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은 고령친화식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용도식품과 유사한 개념의 의료용 식품(Medical Food)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4.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의 규격

구분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점도증진식품
형상	쉽게 씹을 수 있음	잇몸으로 으갠 수 있음	혀로 으갠 수 있음	관계 없음	겉쪽하기 조정
씹는 힘	딱딱하거나 큰 것은 약간 먹기 어렵다	딱딱하거나 큰 것은 먹기 어렵다	기늘거나 무른 것은 먹을 수 있다	고형은 작더라도 먹기 어렵다	
마시는 힘	보통으로 마실 수 있음	마시기 어려운 것도 있음	물이나 차를 마시기 어려운 때가 있음	물이나 차를 마시기 어려움	
물성 규격	경도 (N/m2 이하)	5 × 10 ⁵	5 × 10 ⁴	sol : 1 × 10 ⁴ gel : 2 × 10 ⁴	sol : 3 × 10 ³ gel : 5 × 10 ³
	점도 (mPa.s 이하)			sol : 1,500	sol : 1,500
성상 등			gel은 물기가 많을 것, 고형물은 혀로 으갠 수 있을 것	gel은 물기가 많을 것, 고형물이 없는 균질 상태일 것	음식물에 첨가하거나 용해수로서 1-4의 물성으로 조정 가능한 것

의사의 감독 하에서 경구 또는 경관섭취 및 경장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조건)으로 과학적 원칙을 근거로 의학적 평가에 의해 확립된 특수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증상을 위한 특별한 식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 (희귀의약품 관리법에 따름)

정의에 따르면 의료용 식품의 소비자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은 제외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의무표시 규정은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FDA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환자를 위한 식품의 표시
- 제품의 내용량, 제조자, 소분자 또는 판매자의 명칭, 소재지, 성분 리스트
- 제품이 대상으로 하는 질환 및 목적
- 의사의 감독 하에서 사용해야 할 것 등을 표시

또한 미국은 가장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건강식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용성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범위 내에서는 사전허가 없이 제조·판매·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표시제도에 관한 미국 식품법의 기본 입장은 식품의 종류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에 무엇을 강조(claim)하느냐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다. 의료용 식품은 정의는 정해져 있지만 인정 또는 영양성분 등이나 표시, 유통 등에 관한 규제는 없으며, 기업은 식품에 관한 일반법인 '미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자사의 제품을 의료용 식품으로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5. EU의 고령산업 관련 제도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선택권과 이송을 지역사회 포괄서비스로 그 선택범주를 다양화하고, National Health Care & Community Care Act (1990) 등 법·제도를 재조정하여 민간의료자원 참여와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홈케어, 주간보호, 요양시설 등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을 제도화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재활 및 보조기술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산업적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적용을 통해 관련산업 분야 활성화 추구 및 노인의 사회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령친화산업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 >

TIDE('91-'99): 장애인·노인 재활기술개발 (사회적 산업적 목표 동시추구)

FP4('94-'98): 장애인·노인을 위한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FP5('98-'02): 생명의학 등 다학제 연구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제고

FP6('02-'06): 공중보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생명공학

* TIDE : Technical Initiative for Disabled and Elderly People

* FP : 5-year Framework Program

6. EU의 고령친화 식품산업

EU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특수영양용도 식품 중 일부가 고령 소비자를 위해 제공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수영양용도 식품은 특수한 조성 혹은 제조 공정에 의해 통상 섭취하는 식품과 분명하게 다른 식품을 의미하며, 표시된 영양 목적에 적절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것(특수영양용도 식품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에 의해)을 말한다. 주 대상자는 소화 과정이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특수한 생리학적 상태에 있어 식품의 일부 성분의 섭취 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특별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특수영양용도 식품은 ① 유아용 식품(젓먹이용 인공유, follow up milk, 곡물 가공 식품 및 이유식), ② 감량을 위한 칼로리 제한식에 이용되는 식품(다이어트식), ③ 특수한 의료 목적을 위한 규정식(의료식), ④ 극도로 근육을 사용할 때 소비 에너지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식품(스포츠식), ⑤ 탄수화물 대사 장애(당뇨병)의 환자를 위한 식품으로 분류된다.

III 결론

우리나라와 제 외국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고령친화식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었다. 일본은 개호식품이라는 형태로 판매하고, 유럽은 별도의 구분 없이 특수의료용 식품 중 일부가 노인 수요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별도의 규정 없이 의료용 식품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노인 수요자의 경제적 수준,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신체적 특징에 따라 섭취

하는 식품의 특성이 다르며, 또한 국가의 보험제도, 복지 정책, 소비자의 요구도 등에 따라 기업의 고령친화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진입노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볼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식품산업을 포함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및 다양한 유형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등 고령친화식품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의 범위를 일반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고령친화식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전망, 경제력이 약한 노인 소비자의 구매력 보충 방안, 기업의 관련 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노인 소비자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의 안전관리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학연관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다가올 화두인 고령친화 식품산업 활성화는 복지 증진, 안전 확보 및

산업 육성을 목표로 단기 과제가 아닌 체계적인 중장기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6
2. 웰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11
3. 고령자용 식품의 제조기술 동향, 식품과학과 산업, 2010
4. 200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문화, 여가, 소득, 소비, 노동, 사회참여), 통계청, 2009
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I), 2005
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II), 2006
7. 2005 일본 고령사회백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8.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9.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9
10. 세대별 자산-연령 프로파일의 분석,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2006
11. 가입자 특성과 가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